

의안 번호	1205
----------	------

경 기 도 의 회
제 282회 임시회

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

2013. 10. 18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목 차

I. 심사경과	3
II. 제안설명의 요지	4
III. 검토보고	4
IV. 질의 및 답변요지	4
V. 토론요지	4
VI. 심사결과	4

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년 10월 18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: 2013년 8월 26일

나. 제 출 자 : 경기도지사

다. 회 부 일 : 2013년 10월 11일

다. 상정일자

○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

1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(2013. 10. 11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

2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(2013. 10. 12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3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(2013. 10. 14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,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

4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(2013. 10. 17.)

-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 : 생략

(총괄제안설명자 :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동근)

III. 검토보고 : 별첨 1

(검토보고자 : 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훈재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생략

VI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※ 수정내역 : 별첨2 계수조정내역 참조.

별첨 1

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, 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	2013년도 기정 기금운용계획	증 감 액	비 고
기 금	1,237,272	1,148,767	88,505	

※ 예산규모는 총계규모로 작성

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감 내역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 입	지 출
합 계	88,505	88,505
기 금	☐ 통합관리기금 70,000 • 예수금 70,000	☐ 통합관리기금 70,000 • 예탁금 70,000
	☐ 중소기업육성기금(운전자금) -	☐ 중소기업육성기금(운전자금) - • 예탁금 50,000 • 예치금 △50,000
	☐ 재난관리기금 18,505 • 예치금회수 18,505	☐ 재난관리기금 18,505 • 예탁금 20,000 • 예치금 △1,495

-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하면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기금의 금고 예치금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중소기업육성기금(운전자금)에서 500억원,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

II. 검토의견

○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

- 세수 감소에 따라 기금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용자금으로 전환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중소기업육성기금(운전자금)에서 500억원,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원, 총 7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

○ 경기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통합관리하고, 용자를 통한 투자사업의 지원하는 것은 현재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

- 일자리 창출과 도내 중소기업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

□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제5조(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)

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- 현 재정 위기 여건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함이 적절한 기금이 있는지 등에 대한 기금 전반의 통폐합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□ 기금을 폐지·통합하여야 하는 경우 (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)

-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
-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-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-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【기금운용 현황】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기금조성규모			2013 기금운용계획			비고
	2013(A)	2012(B)	증감(A-B)	2013(A)	2012(B)	증감(A-B)	
계(17개)	1,669,998	1,668,337	1,661	1,047,071	1,111,437	△66,666	
사업성 기금(9)	134,581	141,426	△6,845	34,604	30,170	4,434	
융자성 기금(4)	1,223,488	1,208,871	14,617	566,748	597,438	△30,690	
적립성 기금(3)	311,929	318,040	△6,111	445,719	483,829	△38,110	
통합관리기금	414,488	406,329	8,159	101,689	112,499	△10,810	

- 사업성(9) : 남북교류, 노동복지, 체육진흥, 농촌지도자, 사회복지, 노인복지, 여성발전, 청소년육성,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('12년 신설)
- 융자성(4) : 중소기업육성, 농업발전, 식품진흥, 환경보전
- 적립성(3) : 지방채상환재원적립, 재해구호, 재난관리

'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조정내역(기금)

□ 세입예산

(단위:천원)

위원회 (기금명)	명세서 페이지	사 업 명	제1회 추경 예산액 (가)	기정액 (나)	제1회 추경 증감액 (다=가-나)	예결위 조정액		비 고
						감액(바)	증액(사)	
합 계			130,806,647	42,301,825	88,504,822	△88,504,822	0	
기획재정위원회			85,260,653	15,260,653	70,000,000	△70,000,000	0	
통합관리기금	기금운용 계획 15	예수금	85,260,653	15,260,653	70,000,000	△70,000,000		
행정자치위원회			45,545,994	27,041,172	18,504,822	△18,504,822	0	
재난관리기금	기금운용 계획 38	예치금회수	45,545,994	27,041,172	18,504,822	△18,504,822		

□ 세출예산

(단위:천원)

위원회 (기금명)	명세서 페이지	사 업 명	제1회 추경 예산액 (가)	기정액 (나)	제1회 추경 증감액 (다=가-나)	예결위 조정액		비 고
						감액(라)	증액(마)	
합 계			120,534,116	102,029,294	18,504,822	△70,000,000	51,495,178	
경제과학기술위원회			98,725,476	98,725,476	0	△50,000,000	50,000,000	
중소기업육성기금 (운영자금)	기금운용 계획 28	통합관리기금 예탁	50,000,000	0	50,000,000	△50,000,000		
중소기업육성기금 (운영자금)	기금운용 계획 28	도금고 예치금	48,725,476	98,725,476	△50,000,000		50,000,000	○ 예탁금 감액금액 도금고 예치
행정자치위원회			21,808,640	3,303,818	18,504,822	△20,000,000	1,495,178	
재난관리기금	기금운용 계획 39	예탁금	20,000,000	0	20,000,000	△20,000,000		
재난관리기금	기금운용 계획 39	도금고 예치	1,808,640	3,303,818	△1,495,178		1,495,178	